

# 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2. 26
- 제공지 : 농림부 축산정책과
- 과 장 : 김 경 규
- 사무관 : 강 형 수
- 전 화 : 500-1900

이 자료는 2005년 12월 2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목 :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4만5천호 모두 등록

□ 농림부는 일정규모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·군에 등록해야 하는 전국의 축산농가 45,323호가 법정기한인 12.26까지 모두 축산업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,7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1,063호에 이른다고 밝혔다.

\* 등록농가(51,063호) : 부화업 198호, 종축업 475, 계란집하장 30, 한육우 25,630, 낙농 8,616, 양돈 9,324, 양계 6,205, 오리 585

\* 축종별 등록대상 : 소 300m<sup>2</sup>, 양돈 50m<sup>2</sup>, 양계·오리 300m<sup>2</sup>

\*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,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을 위한 제도로써 축산법 및 시행령을 개정('03.12)하여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대상 농가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었다.

○ 농림부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은 그 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축산농가가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.

\* 월별 등록률 : ('05.1)32.2% → (3월)50.7 → (5월)73.0 → (9월)91.8 → (12월)100

-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작성하고 시·군이 현장 확인한 농가단위별 사육두수와 사육시설규모에 관한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축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
- 농림부는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,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.
  - 앞으로, 특정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,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. 예를 들어,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, 질병발생 해당 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.
    - 특히, 등록 농가별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위치추적장치(GPS)를 2006년도에 도입하여 가축질병 예찰과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하고, 차단방역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.
    - 또한 국내외 주요 가축 질병동향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 농가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.
  - 2006년도에 시행할 지역단위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등록농가가 많은 시·군을 선정하여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, 등록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유통중인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장명 및 농가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- 또한, '07년부터 실시예정인 「가축두당 사육시설 면적기준」도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.
-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·농가주·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, 축산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·약품·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- 현재는 시·군에서만 등록농가별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, 중앙에서도 농가별 등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.
-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년 1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등록정보의 갱신을 추진할 것이다.
- 등록정보의 타용도 이용 및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농림부 관계자는 “등록농가가 휴·폐업, 영업재개,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,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장·군수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<참고자료>

**축산업등록제 변경신고 사항**

- 사업장의 명칭(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)이나 대표자(법인의 경우) 변경
- 부화업 : 부화(1회입란)능력이 20% 증가, 부화대상 가축의 종류변경
- 종축업 및 가축사육업
  - 등록된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등록된 후 20% 이상 증가
  - 소사육업을 하는 경우 사육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
  - 양계업 등록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·공급하고자 하는 경우

**시·도별, 축종별 등록농가 현황**

(단위 : 호, '05.12.23 기준)

구분		부화업	종축업	계란 집하장	한육우	낙농	양돈	양계	오리	계
합계	등록대상	198	475	30	20,197	8,427	9,284	6,131	581	45,323
	희망농가	-	-	-	5,433	189	40	74	4	5,740
	계	198	475	30	25,630	8,616	9,324	6,205	585	51,063